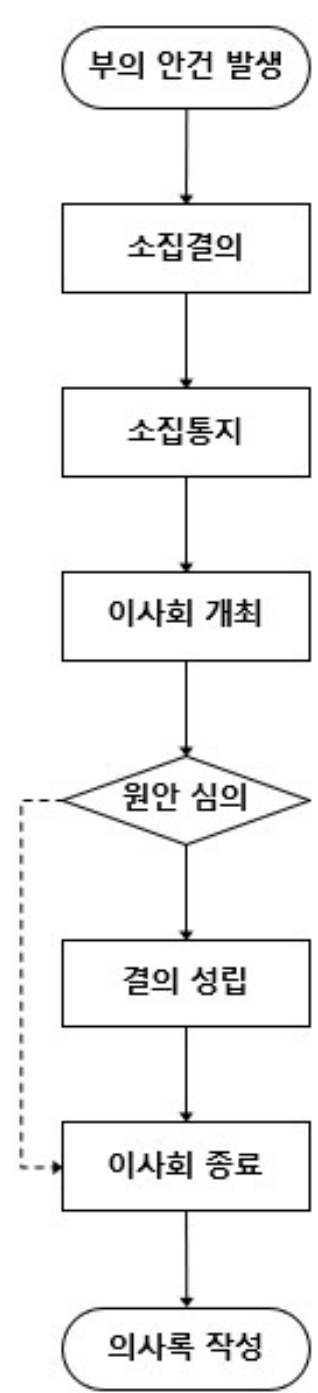


표준 관리	적용 범위	표준 책임팀	적용 일자	검토 주기
	공통	재무팀	2024.09.01	1회/년
목적	이 지침은 이사회에의 적당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업무범위	이사회에의 구성과 회의소집 및 결의사항, 의사록 관리 업무에 대해 적용한다.			
성과관리	관리지표	산출기준	주기	비고
		해당사항 없음		
제·개정 사유	조직변경 및 ESG경영 추가			

1. 업무 FLOW CHART

INPUT	업무 흐름도	주요업무내용	OUTPUT	책임팀	IT Sys. & 관련표준
이사회 안건 발생	 <pre> graph TD A([부의 안건 발생]) --> B[소집결의] B --> C[소집통지] C --> D[이사회 개최] D --> E{원안 심의} E --> F[결의 성립] F --> G[이사회 종료] G --> H([의사록 작성]) E -.-> G </p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 개최 - 이사회 의장이 소집 - 회일 5일 전 이사 전원통지 (서면 or 전자문서 or 구두) -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반대이유, 출석이사 서명 		<p>과려팀</p> <p>재무팀</p> <p>재무팀</p> <p>재무팀</p> <p>재무팀</p> <p>재무팀</p> <p>재무팀</p>	
이사회 의사 결론					

2. 용어의 정의

NO	용어	정의
1	이사회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사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필요상설기관
2	이사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법적인 지위와 책임을 갖는 사람
3	사내이사	이사회의 구성원 중 회사에 상근하여 경영과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는 임원
4	사외이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외부 전문가를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임명
5	대표이사	사내이사 중 이사회의 대표로 선임된 이사
6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에서 나온 회의 내용과 결과를 기록한 문서

3. 책임과 권한

3.1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 1) 회사의 업무를 결정 및 집행하며,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함
- 2)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 또는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은 사항의 업무를 집행
- 3)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 외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회사를 대표함

3.2 사내이사

- 1)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 2)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

3.2 사외이사

- 1)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 2) 사내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에 대하여 그 적법성 및 타당성을 감시, 감독

3.3 이사회

- 1)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 및 재무,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2)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3) ESG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과 책임을 진다.
- 4) 본 규정에서 이사회의 부의사항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업무집행에 관한사항은 대표이사

에게 위임한다.

3.4 재무팀(이사회 간사)

- 1) 이사회 간사 역할을 수행하며, 이사회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한다.
- 2) 이사회 소집통지, 부의안건 정리 및 배포, 의사록 작성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5 HR팀

- 1) 이사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검토 및 이사회 구성원들의 임기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3.6 감사팀

-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운영평가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

3.7 이사의 책임

- 1) 이사회 이사는 임무해태 등의 경우에 상법 등 법률이 전하는 바에 따라서 회사와 제 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2) 이사는 법령과 정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책임을 다한다.

4. 상세 업무 절차

4.1 이사회 구성

4.1.1 이사의 선임

- 1)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2)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4) HR팀에서는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 추천된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1.2 이사회 구성

- 1)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2)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2) 이사회내에 감사위원회를 두며, 세부지침은 감사위원회 운영지침(KCS-0Z-0204)을 따른다.

4.1.3 이사회 의장

- 1)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며, 선임된 대표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사회 의장을 선출한다.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모든 회의를 주재하며, 이사회의 질서를 유

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2) 이사회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4.2 이사회 소집

4.2.1 이사회 소집

1) 이사회 부의안건 발생 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2) 이사회 의장이 필요 또는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1인 이상의 이사의 청구가 있고 그 청구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4.2.2 소집 통지

1)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5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기재한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의 전원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4.2.3 부의안건 및 보고사항 제안

1) 보고사항이 있거나 의안을 부의하고자 하는 부서는 이사회 부의요청서(0Z-0203-01)를 작성하여 간사(재무팀)에게 제출한다. 간사는 이를 검토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 후 부의여부를 결정한다.

2) 각 이사가 이사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간사를 통해 이사회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4.3 이사회 부의사항 및 보고사항

4.3.1 이사회 부의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정관의 변경

(4) 자본의 감소

(5)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6)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부의 양수

(7)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8) 이사의 선임 및 해임

(9)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0)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11) 주식배당 결정
 - (1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13) 이사의 보수
 - (14)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승인 및 주주총회 보고
 - (15) 법정준비금의 감액
 - (16)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 2) 경영에 관한 사항
- (1) 이사회 의장 선임 및 해임
 -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 공동 및 각자대표의 결정
 - (4)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5)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6)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 (7) 경영진에 관한 규정 개폐
 - (8)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 분할합병의 결정
 - (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 3) 재무에 관한 사항
- (1) 신주의 발행
 - (2)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 (3) 준비금의 자본전입
 - (4)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 (5) 100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신규 시설투자, 시설 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
 - (6) 자기자본의 100분의 1 이상의 타법인에 대한 대여(금전 또는 유가증권)
 - (7) 자기자본의 100분의 1 이상의 타법인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
 - (8)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의 대규모 신규차입
 - (9)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이상에 상당하는 타인을 위한 신규 보증 또는 담보 제공
 - (10) 자기주식 취득, 처분 및 신탁계약 등의 체결 해지
 - (11) 자기주식 소각
- 4) 이사에 관한 사항
-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 (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 (3) 타회사의 임원 겸임
- 5) 기타 부의사항

-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2)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
- (3)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선임
- (4)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중요 정책의 승인
- (5)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조직구조, 보고체계 및 성과평가 연계방식의 변경
- (6)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사회에 승인사항으로 정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
- (7) 기타 법령, 공시규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3.2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

-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결과 및 개선 조치사항
-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변화 사항(설계 및 운영 포함)에 대한 경영진의 조치사항
- 6) 재무보고 및 부정위험과 관련된 제반 위험에 대한 사항
- 7) ESG 경영에 관련한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운영결과와 개선사항.
- 8)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4.4 이사회 심의 의결

4.4.1 관계인의 출석

- 1) 이사회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이사회에의 구성원이 아닌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 등을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4.2 이사회 결의방법

- 1) 이사회에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3) 이사회에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결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이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4.3 이사회 의사록

- 1)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0Z-0203-02)을 작성하여야 한다.
-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3)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4) 회사는 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 5) 이사회 부의 안건, 의사록 등 관련자료는 이사회 간사인 재무 팀에서 관리하며, 본사에 비치한다.

4.4.4 이사회 권한의 위임

- 1)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4.4.5 긴급사항

- 1)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 회장이 다른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 전 항에 의거 긴급 조치한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4.5 이사회 내 위원회

- 1)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2)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3)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4.6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 1)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2) 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 법적, 규제적 및 고객 요구사항

NO	요구사항	비고
1	주식회사의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상법	
---	----	--

6. 기록 및 양식

NO	기록 및 양식	양식번호	보존	비고
1	이사회 부의요청서	0Z-0203-01(0)	5년	
2	이사회 의사록	0Z-0203-02(0)	5년	

7. 개정이력

NO	일자	개정내용
0	2023.08.01	업무 규정화 및 내부회계통제에 따른 신규 제정
1	2024.07.15	조직변경 및 ESG경영 추가